

【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및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검 토 보 고 서

【 추 가 경 정 예 산 안 】

일 반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

고 용 보 험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2026. 4.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I.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1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2
3.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5
(1) 총괄현황	5
(2) 세부사업별 현황	6
II. 검토의견	9
[고용정책실]	9
(1)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일반회계, 1234-300)	9
< 청년 참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12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15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설계 필요 >	17
(3)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1045-350)	25
< 업종·지역 특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한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28

[청년고용정책관 · 통합고용정책국]	36
(1) 청년고용인프라운영(일반회계, 1032-303)	36
< 민간부문 채용 연계 등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38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42
< 지원대상 확대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44
(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일반회계, 1051-305)	50
< 신규 유형 사업에 관한 사업모델 구축 필요 등 >	53
 [직업능력정책국]	58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58
<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추정 증액분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 려한 조정 필요 >	62
< K-뉴딜 아카데미 사업과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검토 필요 등 >	64
 [노동정책실]	67
(1)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67
< 대규모 체불사업장 융자 대책 마련 검토 필요 >	70

I.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층과 석유화학 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산업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필수 소요 중심으로 26.2조원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를 통해 고유가 대응 안정망을 구축할 계획임.

둘째, 정부는 저소득,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청년 등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청년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 안전을 지원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할 계획임.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금번 정부는 필수소요 중심으로 2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 ①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②민생안정 2.8조원, ③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④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⑤국채 상환 1.0조원을 편성함.

추가경정예산안 26.2조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을 위해 5.1조원을, 고유가 피해 지원금 4.8조원을, 등유·LPG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에너지 복지비용에 0.2조원을 편성함.

둘째, 민생 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0.8조원을, 청년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9조원을, 서민 생활 물가 경감을 위해 0.1조원을 편성함.

셋째,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과 관련하여,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기업 및 수출기업 비용 경감을 위해 1.1조원을, 탄소중립 투자를 강화하고, 문화·첨단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0.8조원을,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0.7조원을 편성하였음.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①고유가 대응, ②민생 안정, ③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주
요
내
용

총 26.2조원

①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 ▶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5.1조원
- ▶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원
- ▶ 에너지 복지 0.2조원

② 민생 안정 +2.8조원

- ▶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조원
- ▶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조원
- ▶ 고물가 대응 0.1조원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 ▶ 피해기업·산업 지원 1.1조원
- ▶ 에너지·신산업 전환 0.8조원
- ▶ 공급망 안정화 0.7조원

④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교부세(금) 증액 등

⑤ 국채 상환 1.0조원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조달 구조

구 분	비고
①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2조원	추경재원 26.2조원
② 기금 자체 재원 1.0조원	

3.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총괄 현황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규모는 5,386억 원으로, 본 예산 35조 3,452억 원의 1.4% 수준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866억 원(6.5%)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20억 원(1.6%)이 증액 편성됨.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용보험기금은 186억 원(0.1%) 증액, 임금채권보장기금은 899억 원(10.6%), 근로복지진흥기금은 316억 원(15.8%) 증액 편성됨.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	2026년		
	본 예산	본 예산 (A)	1회추경 증액분(B)	(B/A)
총지출(A+B)	353,452	376,761	382,147	5,386
▪ 예산지출(A)	57,549	66,657	70,643	3,986
- 일반회계	51,469	59,082	62,947	3,866
- 에특회계	866	895	895	-
- 지특회계	1,229	2,660	2,780	120
- 고특회계	3,985	4,021	4,021	-
▪ 기금지출(B)	295,903	310,104	311,505	1,401
- 고용보험	178,066	184,777	184,962	186
- 산재보험	100,176	104,720	104,720	-
- 장애인	9,372	10,137	10,137	-
- 임금채권	6,285	8,476	9,375	899
- 근로복지	2,004	1,995	2,310	316

(2) 세부사업별 현황

고용노동부는 ①고용충격완화, ②취약 노동자 생활안정, ③청년집중 지원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억 원)

주요 내용	일반회계	지특회계	기금
고용충격완화 (+306억원)		①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120억)	①고용유지지원금(+186억)
취약노동자 생활안정지원 (+1,215억원)			①체불청산지원용자(+899억) ②생활안정자금융자(+90억) ③신용보증대위변제(+226억)
청년집중지원 (+3,866억원)	①국민취업지원제도 (+801억) ②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8억) ③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 지원(+265억) ④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12억) ⑤내일배움카드(일반) (+2,530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충격 완화를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등 2개 사업에 306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변동 우려가 큰 업종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86억원을, ②대외적 충격 장기화 시 지역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선제 지원을 위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예산 120억원을 편성함.

둘째,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용자 등 3개 사업에 1,215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용자 예산 899억원을, ②저소득 노동자, 특고,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용자 예산 90억원을, ③경기둔화로 용자상환에 어려움이 큰 취약노동자 등에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대위변제 예산 226억원을 증액 편성함.

셋째, 경기충격으로 인한 고용위축에 취약한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5개 사업에 3,866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801억원을, ②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 258억원을, ③현장직무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예산 265억원을, ④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신설 등을 위해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예산 12억원을, ⑤K-디지털트레이닝 규모를 확대하고,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신설 등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일반) 예산 2,530억원을 증액 편성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증액 사업내역]

(단위: 억 원)

연번	사 업 명	'26년		주 요 내 용
		본예산	1차추경안 (순증)	
	합계		+5,386	
	① 고용충격완화		+306	
1	고용유지지원금	702	+186	▪ 유급휴업·휴직지원(+1만명)
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501	+120	▪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지원(+4개지역)
	② 생활안정지원		+1,215	
3	채불청산지원용자	706	+899	▪ 용자지원 확대
4	생활안정자금용자	894	+90	▪ 생활안정지원 확대(+1.7천명)
5	신용보증대위변제	377	+226	▪ 용자시 보증
	③ 청년집중지원		+3,866	
6	국민취업지원제도	10,128	+801	▪ 1유형(3만명) ▪ 청년지원단 125명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80	+258	▪ 비수도권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인원 확대(+1.5만명)
8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848	+265	▪ 일경험지원 확대(+3천명) ▪ 사회적가치형(신설) (+1천명) ▪ 도전프로그램 확대(+1천명) ▪ 성장프로젝트 확대(+3천명)
9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1,069	+12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
10	내일배움카드(일반)	6,273	+2,530	▪ KDT 지원 확대(+1만명) ▪ K-뉴딜아카데미(신규 1.5만명)

Ⅱ. 검토의견

[고용정책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일반회계, 1234-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2021년~, 직접)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1조 128억 3000만원 대비 801억 3,300만원(7.9%) 증액된 1조 929억 6,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09	1,010,865	1,012,830	1,092,963	80,133	7.9
· I 유형	714,087	853,100	873,620	952,243	78,623	9.0
· II 유형	130,657	156,800	138,245	138,245	-	-
· 전산망 강화	965	965	965	96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	-	-	1,510	1,51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임.

동 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법 제6조)와 구직촉진수당(법 제7조)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만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I 유형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구직자 중 소득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세부 유형을 구분하여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역사업임.

II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장년층, 기초연금 수급자와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취

1)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구직단념청년, 산

업활동비용²⁾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요건 비교]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 발 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선발시 고려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선발시 고려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청년층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특정계층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또한 I 유형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그들의 생계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마찬가지로 최대 6개월 지급)의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일정 요건을

재로 장해를 입은 자 등이 포함됨

- 2) 취업활동비용은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참여장려수당, ③훈련참여지원수당(2026년 폐지)으로 구분됨.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5~25만원이 지급되고, ②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 차원에서 월 1회 2만원을 최대 5회에 한하여 지급됨. ③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5년 기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까지 지급하였고 2026년 폐지됨.

갖춘 I·II 유형 사업 참여자의 취업 성공 후 근속 유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창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

〈 청년 참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상황 및 업황 악화에 대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강화하고자 I 유형 사업 중 선발형(청년) 참여자 목표인원을 30,000명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률, 평균지급횟수 등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 604억 400만원, 부양가족수당 19억 2,300만원, 민간위탁기본금 128억 2,500만원, 취업인센티브 34억 7,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음.

특히 이번 추경안은 청년 고용상황의 악화에 대비한 것으로 I 유형 사업 참여자 중에서도 청년층의 취업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을 편성하여 청년 125명에게 고용서비스 분야 일정험을 부여할 계획임.

실제로 ‘쉬었음’ 청년의 수는 2022년 이래로 매년 증가하여 2026년 2월 기준 쉬었음 청년의 수는 48.5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로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쉬었음’ 청년의 수]

(단위 : 천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2
인원수	418	390	401	421	428	485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사업 중 청년 목표 지원인원인 135,000명은 2023년~2025년 실제 지원인원과 비교하여 많은 수준이므로, 청년 참여자 모집 실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2월*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I 유형	소계	400,000	226,746	56.7	248,000	249,664	100.7	242,000	220,080	90.9	242,000	42,156
	요건심사형	200,000	83,595	41.8	88,000	88,431	100.5	117,000	106,220	90.8	117,000	20,545
	선발형(청년)	140,000	114,454	81.8	140,000	134,543	96.1	105,000	92,623	88.2	105,000	18,223
	선발형(비경활)	60,000	28,697	47.8	20,000	26,690	133.5	20,000	21,237	106.2	20,000	3,388
II 유형	소계	70,000	69,303	99.0	60,000	65,561	109.3	118,000	88,535	75.0	108,000	13,959
	특정계층	20,000	15,029	75.1	10,000	12,535	125.4	12,000	15,032	125.3	12,000	1,899
	청년층	40,000	39,709	99.3	40,000	40,259	100.6	78,000	56,831	72.9	78,000	9,785
	중장년층	10,000	14,565	145.7	10,000	12,767	127.7	18,000	16,672	92.6	18,000	2,275

* 자료: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2월 대비 3월부터 참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바 2026년 목표인원 달성률을 표시하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목표 지원인원은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목표와 동일하게 요건심사형 117,000명, 선발형(청년) 105,000명, 선발형(비경활) 20,000명 합계 242,000명인데, 2025년 기준으로 선

발형(비경활) 부문에서는 목표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그런데 추경안은 선발형(청년) 목표 지원인원을 105,000명에서 135,000명으로 30,000명(28.6%)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2023년~2025년 실제 지원인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I 유형 선발형(청년) 실제 지원인원은 2023년 114,454명, 2024년 134,543명, 2025년 92,623명으로, 현재 선발형(청년) 목표인 105,000명에서 30,000명을 확대하는 경우 목표인원인 135,000명은 해당 실적을 초과하는 규모임.

즉 청년 고용상황의 악화와 이에 따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번 추경안의 목표인원은 본예산 대비 28.6% 늘어난 상황으로서 참여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 발굴 방식은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연계·협업기관을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발굴하는데, 전국 132개소의 고용센터에서도 자체 홍보·모집 등을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발굴하고 있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자립지원전담기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연계·협업기관을 통하여도 참여자를 모집·발굴하고 있으나, 대규모의 참여자 발굴을 위해서는 전국 287개소의 민간위탁기관에서도 각각 많은 실시인원을 발굴하여 취업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2006~, 자치단체 보조)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국비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³⁾ 동 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1,501억 800만원 대비 120억원(8.0%) 증액된 1,621억 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107,864	137,864	150,108	162,108	12,000	8.0
· 자치단체지원	98,034	128,034	105,006	117,006	12,000	11.4
버팀이음프로젝트	-	30,000	45,000	57,000	12,000	26.7

*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은 크게 ‘일자리 이음프로젝트’와 ‘지역상생형 일터 조성프로젝트’로 구분됨.

먼저, 일자리 이음프로젝트는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①광역이음프로젝트(광역 간 연계)와 ②기초이음프로젝트(기초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간 연계), 통상환경 변화, 재난 등 예기치 못한 고용변동에 대응하는
 ③버팀이음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버팀이음프로젝트가 이번
 제1회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개요(일자리 이음프로젝트)]

구분	광역이음프로젝트	기초이음프로젝트	버팀이음프로젝트
지원산업	광역시권 내 전략·육성 산업	기초-기초, 광역-기초 간 일자리로 연결이 가능한 산업	고용 위기, 산업위기 지정관련 주요 업종
지원대상	광역시자치단체 간 초광역권(광역시자치단체+ 광역시자치단체)을 구성하여 광역이음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시자치단체	고용위기·산업위기(선제 대응) 지역 관할 광역시자치단체(우선), 이에 준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지원 방식	공모	공모	비공모 신청 원칙, 다만 예산 사정을 고려 필요시 공모(고용위기·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시 1회)
운영 방향	광역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자원과 지원 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동사업 설계·전달 거버넌스 체계 활성화	기초자치단체를 기능적으로 분업하고, 광역 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인프라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 브랜드화’ 추진	구조적·국지적 충격으로 인한 지역·주력산업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접 생활권에서의 매칭을 우선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전환과 생활 안정을 동시 지원
지원규모	모델당 최대 150억 한도	모델 당 최대 30억 한도	지역당 최대 80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지역상생형 일터 조성프로젝트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업종·기업 등을 발굴하여 임금·복지, 근로환경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인 ①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사업과 울산·전북·전남·경남의 조선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원청·자치단체·정부의 4자 공제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하는 ②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등으로 구성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개요(특정산업 대상)]

구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지역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산업	조선업	조선, 석유화학, 항공우주, 식품, 자동차부품, 시멘트, 방산, 호텔리조트
지원대상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 방식·내용	근로자·원청·자치단체·정부 4자 공제금액 적립 (각 2년간 200만원 납입, 만기시 총 800만원 수령)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업종·기업을 발굴하여 노동부·자치단체·원청·협력사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사 근로자 임금·복지 등 지원
지원규모	전국 129억원 한도	전국 200억원 한도 (모델별 지원규모 상이)

* 자료: 고용노동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설계 필요 >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 유가 급등에 따른 지역 내 제조 및 물류비용 상승 압박으로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의 악화가 우려되며, 이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단위의 고용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버팀이음프로

젝트 예산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3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임.

[버팀이음프로젝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2026년도 예산		2026년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0억원	버팀이음프로젝트 450억원 · (본예산) 9개소×50억원 =450억원	570억원	버팀이음프로젝트 570억원 · (본예산) 9개소×50억원 =450억원 · <u>(추경) 4개소×30억원</u> <u>=120억원</u>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국내산업 전반의 석유 의존도를 고려하되, 중동 상황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큰 업종인 석유화학·물류 운송 관련 전·후방산업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직자의 고용안정 및 이·전직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및 공급망 불안이 석유화학·물류 운송 관련 산업 집적 지역의 고용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버팀이음프로젝트 본예산 및 추경안 사업 개요]

구분	버팀이음프로젝트 본예산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안
지원산업	고용 위기, 산업위기 지정 관련 주요 업종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피해업종 (석유화학·물류 운송 관련 등 전·후방산업 등)
지원대상	고용위기·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우선), 이에 준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피해업종 밀집 지역
운영방향	구조적·국지적 충격으로 인한 지역·주력산업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접 생활권에서의 매칭을 우선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전환과 생활 안정을 동시 지원	좌동
지원규모	최대 80억원	최대 30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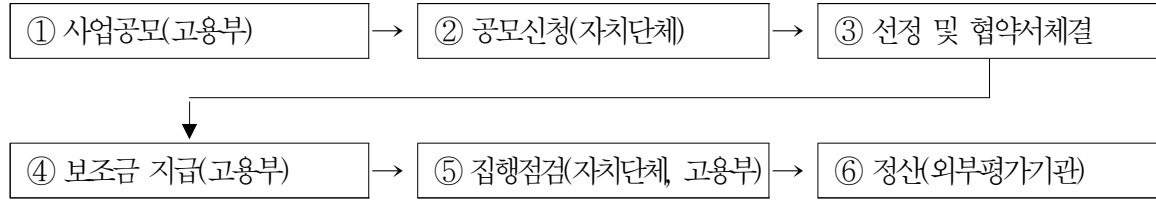
다만, 추경안의 편성 목적을 고려할 때, 집행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사업 지침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심사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번 추경예산안 역시 확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4월 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중 사업공모 및 지원 대상지역 선정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⁴⁾

[버팀이음프로젝트 집행 절차 및 세부 일정]

○ 집행 절차



○ 세부 일정

4월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5월	사업공모 및 지원 대상지역 선정
6~12월	사업 추진
9~10월	지도·점검
'27년 2월	정산

* 자료: 고용노동부

이처럼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공모 신청, 심사 및 협약 체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체계이므로, 추경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운용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특히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지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세부 사업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자체가 단기간 내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설계·공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4) 2025년 추경의 경우 5월 확정 이후 공모와 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은 6월 초에 착수함.
 사업 공모·접수, 지자체 현장 안내 등('25.5.12.~5.30.)
 → 심사위원단, 지역별 사업계획 사전검토('25.5.31.~6.8.)
 → 심사(지역별 대면 PT)·선정('25.6.9~6.10.)
 →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25.6.12.)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25.6.12.~)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 업종 및 지역의 범위와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집행할 수 있는 세부 유형 및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사업을 설계·신청하고 조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가격 급등·물류비 상승 등으로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주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 석유화학·물류·운송 등 원유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업종(전·후방업종 포함) 재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 등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는 이를 참조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설계·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⁵⁾

5)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예시]

구분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 대상	중동상황에 따른 원유가격 급등·물류비 상승 등으로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	석유화학·물류·운송 등 원유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업종(전후방업종 포함) 재직 근로자
지원 패키지	①정주비 + ②교통비+ ③기타(이주비 등)	①건강검진비 + ②심리상담비 + ③기타

* 자료 : 고용노동부

둘째, 추경안은 기존 지원체계와의 관계에서 지원의 대상과 범위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현재 전남 여수(석유화학), 광주 광산구(가전 등), 경북 포항(철강), 충남 서산(석유화학), 울산 남구(석유화학), 전남 광양(철강) 등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⁶⁾ 2025년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에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2025년 추경 및 2026년 본예산 지자체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추경예산	2026 본예산	비고
부산	1,600		
대구	900		
인천	1,000		
광주	2,100	2,000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울산	1,315	2,000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경기	2,200		
강원	690		
충북	2,000		
충남		4,000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전북	1,810		
전남	7,000	6,000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경북	6,385	6,000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경남	2,000		
제주	1,000		
계	30,000	20,000	

* 자료: 고용노동부

6)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지정연도	지정지역	지정기간
2025	전남 여수	2025. 8.28. ~ 2026. 8.27.
2025	광주 광산	2025. 8.28. ~ 2026. 8.27.
2025	경북 포항	2025.11.21. ~ 2026. 5.20.
2025	충남 서산	2025.11.21. ~ 2026. 5.20.
2026	울산 남구	2026. 1.12. ~ 2026. 7.11.
2026	전남 광양	2026. 2.13. ~ 2027. 2.12.

* 자료: 고용노동부

추경안의 주요 편성 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이 밀집한 주요 지역 상당수가 이미 본예산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롭게 지원하려는 대상과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추가지원이 필요한 업종 및 지역의 범위와 선정기준,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산업통상부의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⁷⁾ 사업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대상으로, 주된 산업 및 이와 밀접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원(기술고도화·사업화 지원 등)과 인력양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충격 완화와 산업생태계 유지·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역시 산업 충격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재직자 고용안정, 이·전직 지원,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양 사업은 정책 목적과 지원대상 측면에서 상당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세부사업: 지역산업위기대응(3362-343)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2026년도 예산		2026년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억원	○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지원 90억원 · 기업지원(기술고도화·사업화 지원 등) : 60억원 · 인력양성 : 30억원	160억원	○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지원 160억원 (본예산) · 기업지원(기술고도화·사업화 지원 등) : 60억원 · 인력양성 : 30억원 (추경) · 기업지원(기술고도화·사업화 지원 등) : 50억원 · 인력양성 : 20억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현재 지정·운영 중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전남 여수,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광양)은 모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과 중첩되고, 추경의 편성 배경이 되는 대외 충격은 산업과 고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집행 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및 협의 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지정연도	지정지역	지정기간	비고
2025	전남 여수	2025.5. ~ 2027.4.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2025	경북 포항	2025.8. ~ 2027.8.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2025	충남 서산	2025.8. ~ 2027.8.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2025	전남 광양	2025.11. ~ 2027.11.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 자료: 산업통상부

(3)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1045-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고용유지지원금’(1995~, 직접수행) 사업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액 702억 2,500만원 대비 185억 5,900만원(26.4%) 증액된 887억 8,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B-A)	(B-A)/A
	당초	수정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고용유지지원금	70,255	81,368	70,225	88,784	18,559	26.4
· 고용유지지원금	70,205	81,318	70,205	88,764	18,559	26.4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50	50	20	20	-	-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⁸⁾에 근거하여 산업구조의 변

8)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

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임.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되며, 유급은 다시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됨.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된 경우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임.

‘휴직’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편,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직업안정기관 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여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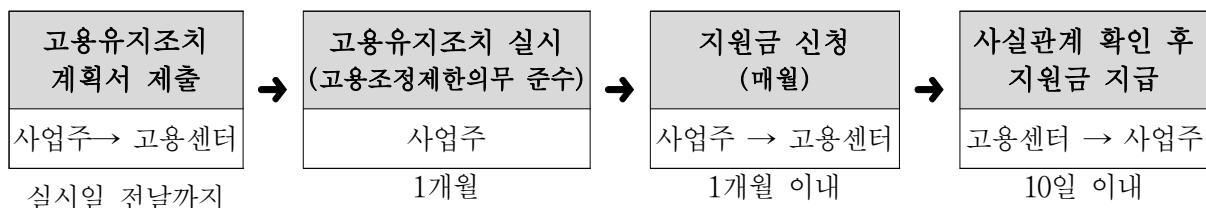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구 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유		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 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고용유지 조치 이행조건	휴업	1개월 단위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후 휴업 수당 등 금품 지급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및 휴업기간 평균임금 50% 미만 수당 지급 실시비율: ▲50% 이상 (1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후 휴직수당 등 금품 지급	직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이상)을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30일 이상 휴직 실시 후 금품 미지급 실시비율: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원수준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근로자별 지급)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유급)의 지원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주는 매월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⁹⁾ 신고한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한(고용조정제한 의무 준수)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기간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함.

[고용유지지원금(유급) 지원절차]



* 자료 : 고용노동부

< 업종·지역 특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한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 원료 수급 차질 및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고용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정부는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조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9) 무급휴업의 경우 사전에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무급휴직의 경우 직전 1년 이내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이상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이상)을 실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필요함.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유급 고용 유지지원금 18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고용유지지원금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2026년도 계획		2026년도 변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2억 2,500만원	○ 보험금(320-04): 702억 500만원 가. 휴업·휴직(686억 8,900만원) · (본예산) 37,575명×854,240원×214개월 ≒ 686억 8,900만원 나. 무급휴업·휴직(15억 1,600만원) · (본예산) 315명×1,476,000원×326개월 ≒ 15억 1,6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 · 채권관리비용 2,000만원	887억 8,400만원	○ 보험금(320-04): 887억 6,400만원 가. 휴업·휴직(872억 4,800만원) · (본예산) 37,575명×854,240원×214개월 ≒ 686억 8,900만원 · <u>(추경) 10,155명×854,000원×214개월</u> <u>≒185억 5900만원</u> 나. 무급휴업·휴직(15억 1,600만원) · (본예산) 315명×1,476,000원×326개월 ≒ 15억 1,6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 · 채권관리비용 2,0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료 수급 차질의 영향을 받는 기초화학 제조업종(정유·납사 가공)을 중심으로 한 증액 편성임.

편성 근거를 보면,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 관련 고용이 약 0.3만~0.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점(한국은행, 2025)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 근로자수(2026년 1월 기준 6.7만명)의 15%에 해당하는 10,155명을 추가 지원대상으로 산정한 것임. 이에 따른 증액 규모는 2025년 월평균 지원단가(85만 4,000원) 및 2018~2019년 및 2024년 평균 지원기간(2.14개월)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고용유지지원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 근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8,559백만원 = ①10,155명×②854천원×③2.14개월 ① 10,155명: 석유정제·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피보험자 67,703명('26.1월 기준)의 15%* * 석유화학기업 구조조정시 관련 고용 약 0.3~0.5만명 감소 전망된 점 고려 ② 854천원: '25년 평균 지원단가 적용 ③ 2.14개월: '18~'19년, '24년 평균 지원기간 적용
--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생산·수출 위축, 경제적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관련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고용 감소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이 고용 안정 및 고용 충격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임.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전제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경제 충격에 따른 고용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출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기준 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유급)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대외 경제 충격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악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행 과정에서는 실제 고용위험 상황을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종 및 지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요건을 설정·적용¹⁰⁾하는 등의 면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추정 편성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도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¹¹⁾¹²⁾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의 수준 및 지원 한도(기간)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1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②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 내 고용 규모 또는 비중이 높은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로 인해 관내 대 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재난 발생에 직접적이거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주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2)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등으로 특정 업종 또는 지역의 경제사정이 특별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의 집행률은 각각 77.7% 및 64.3%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도 추경¹³⁾을 통해 11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96억 3,900만원이 불용된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실제 지원 수요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유급휴업 지원인원은 2022년 64,544명에서 2025년 24,346명으로 감소하였고, 유급휴직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인원 역시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원금 집행액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연도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3.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유급휴업	234,751	113,127 (48.2)	64,544	190,850	125,843 (65.9)	44,136	70,223	70,053 (99.8)	35,291	80,270	71,190 (88.7)	24,346	68,689	16,052 (23.4)	9,212
유급휴직	312,650	307,833 (98.5)	59,616			16,441			9,520			8,294			3,512
무급	49,500	42,842 (86.5)	12,954	6,370	959 (15.1)	599	1,149	72 (6.3)	31	1,048	489 (46.7)	157	1,516	50 (3.3)	48

* 주 1. 2023년부터 유급휴업과 유급휴직 계획액을 통합하여 편성

2. 2026년 집행액은 2026.3.26. 기준

* 자료 : 고용노동부

13)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 등에 따른 고용충격에 적시 대응하고 하반기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취지의 추경 편성

2026년의 경우에는 3월 현재까지 계획현액 702억 2,500만원 중 154억 1,6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2.0% 수준이며, 유급휴업 지원인원은 9,212명, 유급휴직 지원인원은 3,512명, 무급휴업·휴직 지원인원은 48명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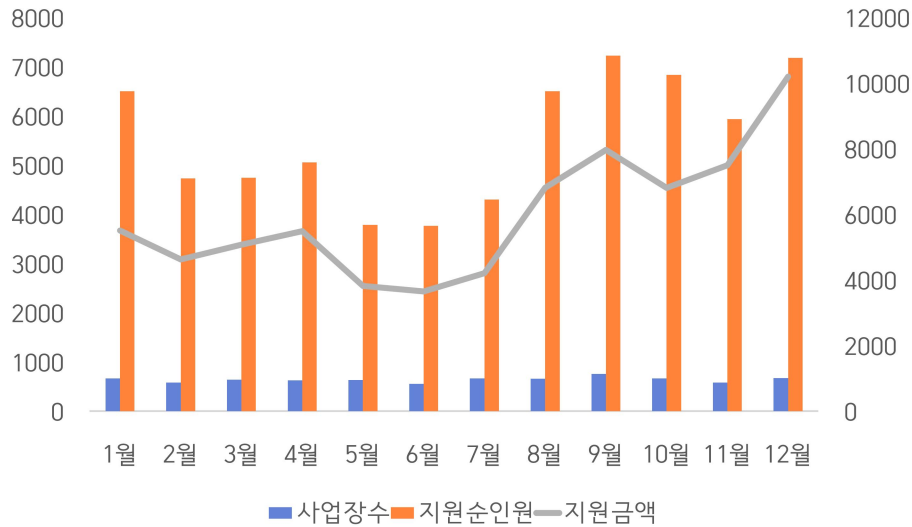
2025년 월별 집행실적을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임. 집행률은 1월 7.8%에서 6월 34.7% 수준에 머무르다가, 이후 9월 58.0%, 10월 66.4%, 11월 75.6%, 12월 88.1%로 확대되었고,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역시 8월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2025년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사업장수	지원연인원	지원순인원	지원금액		
				월별	누계	집행률
1월	664	7,341	6,503	5,509	5,509	7.8
2월	580	5,093	4,731	4,628	10,137	14.4
3월	640	5,307	4,746	5,079	15,215	21.7
4월	627	6,285	5,060	5,490	20,705	29.5
5월	635	4,182	3,786	3,820	24,525	30.1
6월	558	4,234	3,767	3,653	28,178	34.7
7월	666	4,815	4,299	4,209	32,387	39.8
8월	660	6,713	6,503	6,814	39,200	48.2
9월	759	7,957	7,227	7,967	47,167	58.0
10월	666	7,220	6,838	6,810	53,977	66.4
11월	579	6,581	5,938	7,500	61,476	75.6
12월	671	9,005	7,182	10,203	71,679	88.1

* 자료 : 고용노동부



이처럼 사업 특성상 하반기로 갈수록 집행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정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1분기 집행실적이 연중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 집행실적은 전년도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어, 보다 정교한 집행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따라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중동 상황에 따른 고용 충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상황 및 사업장의 신청 수요에 따라 집행 규모가 결정되는 사업인 만큼, 월별 집행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과거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휴업·휴직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이 지연되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¹⁴⁾ 사업주 대상 안내 및 사전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의 면밀한 집행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4) 고용노동부, 『2024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 2024. 7. 25.; MBN 뉴스, “중소업체
울리는 고용유지지원금…”부실 교육으로 부정수급자 만들고 징수금 폭탄”, 2023. 3. 29.
<https://www.mbn.co.kr/news/society/4916018>

[통합고용정책국 · 청년고용정책관]

(1) 청년고용인프라운영(일반회계, 1032-303)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청년고용인프라운영’(2015~, 보조) 사업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2030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1,068억 2,000만원 대비 11억 8,000만원(1.1%) 증액된 1,080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청년고용인프라운영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청년고용인프라운영	109,730	109,730	106,820	108,000	1,180	1.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9,384	109,384	106,524	106,524	-	-
· 2030자문단 운영	67	67	67	67	-	-
· 청년지원센터 포대지원단	-	-	1,180	1,180	순증	-
· 운영비	279	279	229	229	-	-

*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안]

- **(추진배경 및 목적)** 경력을 쌓기 어려운 청년에게 현장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
 - **(지원대상)** 만 15~34세 미취업자 청년(지역 조례에 따라 연령 확대 가능), (청년지원센터) 지역에서 운영되는 청년지원센터
 - **(사업기간 및 지원사항)**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
 - (주요 지원내용) 청년 참여수당, 운영비·멘토링 비용 등 지급
 - (청년) 참여 수당은 주 30시간을 한도로 하고, 참여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 지급(1주 30시간, 1월 130시간 한도)
 - (운영비) 청년 1명당 220만원 산정
- * 운영기관 운영비, 센터 및 멘토링 지원비, 재해보험비용 등을 포함
- ** 청년지원센터에서는 멘토링을 위해 별도 멘토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멘토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

□ (추진일정)

해당 월	수행 내용
4월	· 운영기관 공모(국회 추경예산 통과 직후) · 청년지원센터 수요조사 실시(국조실 협조)
5월	· 운영기관 선정(5월 초) · 운영기관 약정체결(5월 중순) · 청년센터 및 청년 모집 공고
6월	· (운영기관)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대상 사전 교육 · (청년지원센터) 청년과 일경험 표준계약서 체결 · (청년) 일경험 참여 시작(6월중~)
7~12월	· (운영기관) 지원금 지급, 지도·점검 등 관리 · (청년지원센터) 멘토링 실시, 참여실적 제공 · (청년) 일경험 참여
익년도 1~2월	· (운영기관) 사업 정산 및 보조금 반환

〈 민간부문 채용 연계 등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청년고용인프라운영’ 사업의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인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으로 동 사업은 1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예산안 내역]

구 분	산출 근거	예산안(백만원)
참여수당	100명 × 160만원 × 6개월	960
기관 운영비	100명 × 35만원 × 6개월	210
기타 운영비	일경험 참여자 재해보상보험 일괄가입 비용	10
계		1,180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청년이 상담, 프로그램 운영 참여 등 현장 직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여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이 경력을 쌓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 협업으로 청년들에게 현장 직무를 경험하게 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는 청년층이 경기 변동과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직무 경험과 소득을 제공하고 특히 경력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초기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 과정의 공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동 사업의 추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동 사업은 참여수당을 지급하면서 상담 지원, 프로그램 사업 운영 참여 등 공공부문 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단기적인 고용 완충 기능과 소득 보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사업은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사업으로서 해당 일자리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청년층이 동 사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는 상담 보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직무로서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경험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민간부문 채용 연계 등 별도의 채용 연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참여 종료 후 다시 미취업 상태로 회귀하는 등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참여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경력을 쌓기 어려운 청년에게 현장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직무 역량 강화

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직무경험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일반회계 1051-305) 사업에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 내용이 유사한 사업 간 중복 문제 및 사업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동 사업이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동 사업의 추경안은 약 1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100명 규모의 청년에게 6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된바, 1인당 일정 수준의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방식으로 단기적 체감도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청년 실업 규모나 최근 고용지표 악화 추세를 고려할 때 고용 대응 정책으로서의 과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한편, 동 사업과 유사한 소규모 직접일자리 제공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서도 분산적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¹⁵⁾, 각 부처가 고용 악화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절적인 재정 투입으로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간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바, 개별 사업 단위의 타당성 검토를 넘어 부처 간 유사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 논의도 필요할 것으

15)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회계 1234-300) 내 내역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사업 역시 청년층 125명을 대상으로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일반회계, 2631-341)’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총 629명의 청년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66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로 보임.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서 추진되는 또래지원단의 운영기간은 6개월로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6월까지의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청년지원센터 수요조사·청년 모집공고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사전 준비일정의 체계적 조율 및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2022~, 직접) 사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9,079억 5,900만원 대비 257억 5,000만원(2.8%)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77,181	802,597	907,959	933,709	25,750	2.8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사업주에 대한 채용지원금과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결합하여 민간부문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제공 방식이 아닌 시장 기반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정규직 채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단순 채용 유도에 그치지 않고 고용의 질과 지속성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기업 및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일자리 격차 완화와 인력 mismatch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 **(개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도모, 특히 비수도권 청년 이탈 방지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 우대지원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 *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 취업 청년
-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대상 확대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은 기업지원금, 청년근속인센티브 등 주요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25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지역 중견기업의 고용 지원인원 15,000명을 추가한 것으로서, 기업지원금 184억 5,800만원, 청년근속인센티브 50억 4,2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22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2026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제1회 추경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유 형	예산	추경안	증감
기업 지원금	(본예산) 수도권 55,000명 ⇒ (추경) 동일	67,678	67,678	-
	(본예산) 비수도권 50,000명 ⇒ (추경) 65,000명 ※ 비수도권지역 중견기업 지원 확대(15,000명)	61,525	79,983	18,458
청년근속 인센티브	(본예산) 비수도권 50,000명 ⇒ (추경) 65,000명 ※ 비수도권지역 중견기업 지원 확대(15,000명)	16,912	21,954	5,042
민간위탁사업비		26,108	28,358	2,250
계		172,223	197,973	25,750

* 사업예산 내역은 2026년 이후 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 대상을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¹⁶⁾”에서 “5인 이상 우선지원대

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산단에 입주하지 않은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임.

다만, 동 사업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2026년 본 예산 편성 당시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였는데, 동 사업과 같이 일정 기간 고용 유지가 전제되는 사업의 경우 고용 유지율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견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장기 근속 및 경력 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다만,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지원 필요성이 우선지원 대상기업보다 낮다고 보아 산단에 입주한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를 5,000명으로 한정하여 운영하여 왔음.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당초 지원인원 5,000명에 15,000명을 더하여 총 20,000명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미 고용여력이 있

16)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도 채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고용 성과가 낮을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재정 지원이 실제 고용 확대가 아니라 기업의 기존 채용 비용을 보전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중견기업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형평성 및 적절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26년 3월 현재 중견기업 지원 대상자는 총 162명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첫 해라는 점과 2025년 신규채용자에 대한 지원신청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중견기업 지원 대상 5,000명의 3%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원대상 확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2026년 채용인원 신청 현황(3.27. 기준)]

전체 채용인원	수도권	비수도권	
15,694명	7,070명	8,624명	
		우선지원대상기업 채용 청년	중견기업 채용 청년
		8,462명	162명

* 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집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2023년 기준 중견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2,523개사이며, 이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대규모기업)¹⁷⁾은 800개사인바, 추정예산안은 평균적으로 1개

17)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관계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어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상시근로자

중견기업 당 25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는 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중견기업 현황(2023년 기준)]

중견기업 현황			
전체 5,868개			
수도권 3,345개		비수도권 2,523개	
우선지원대상기업 2,724개	대규모기업 621개	우선지원대상기업 1,723개	대규모기업 800개
산단 입주 765개	산단 입주 126개	산단 입주 893개	산단 입주 196개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산업통상부의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2025.12.)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견기업 수는 6,474개이며 이들 기업의 2024년 청년 채용규모는 62,000명으로서, 평균적으로 기업당 9.6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목표인 중견기업의 20,000명 채용은 최근 통계에서 나타난 중견기업의 평균 청년 채용 규모를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사업의 최근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이 첫 시행된 2022년 이후 최근 집행률이 개선되는 추세로 보이나, 2025년도의 경우 추경을 통해 25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726억원과 전용액 112억원이 발생한바 있음.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수 있어 양 범주는 일부 중첩될 수 있음.

[연도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2	542,820	542,769	-	542,769	233,321 [233,321]	43.0	43.0	-	309,448
'23	889,078	889,078	-	889,078	719,429 [719,429]	80.9	80.9	-	169,649
'24	657,680	657,680	-	657,680	537,609 [537,609]	81.7	81.7	-	120,071
'25	777,181	802,597	△11,171	791,426	718,819 [718,819]	89.6	90.8	-	72,607
'26. 2	907,959		-	907,959	133,485 [133,485]	14.7	14.7	-	-

*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최근 자주 변경되고 있는데 2025년에는 빈일자리 업종¹⁸⁾에 취업한 경우도 지원되었으나, 2026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단에 입주한 중견기업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고,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산단에 입주하지 않은 중견기업도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도 일부 변경되고 있음.

그런데 동 장려금이 총 2년간 집행될 경우 기업에게 720만원, 개인에게 480~720만원 등 1인 채용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시기별로 지원 대상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18) 빈일자리 업종은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으로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선정되었음.

수 있고, 특정 시기의 지원대상 확대는 향후 예산 편성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6 본 예산	2026 추경안
기업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채용 -비수도권 청년 채용 ·산단 입주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채용 -비수도권 청년 채용 ·비산단 중견기업 추가
청년근속 인센티브	·빈일자리청년취업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 자료: 고용노동부

(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일반회계, 1051-305)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2006~, 보조) 사업은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청년에게 구직프로그램 및 일경험 등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2,847억 5,200만원 대비 264억 6,900만원(9.3%) 증액된 3,112억 2,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91,779	291,779	284,752	311,221	26,469	9.3
· 청년일경험지원	214,090	214,090	207,610	229,917	22,307	10.7
· 청년일자리강화사업 선정	800	800	800	800	-	-
· 청년도전지원	71,653	71,653	75,783	79,945	4,162	5.5
· 운영비	636	636	559	559	-	-

*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개요]

유형 구분	사업 내용
인턴형	청년이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지원내용) ▶기업: 5만원/주 ▶ 참여수당: 37.5만원/주 ▶ 채류지원비: 5만원/주 등
프로젝트형	기업에서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지원내용) ▶기업: 5만원/월 ▶ 개인수당: 40만원/월 ▶ 팀지원(프로젝트 실행비): 90만원/월 등
ESG 지원형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등 프로그램 참여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대기업 최대 50% 매칭)

*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청년도전프로그램과 청년성장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청년도전프로그램’은 구직단념 청년, 장기간 미취업 중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진로탐색을 위한 1:1 상담, 적성검사, 진로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모의면접, 이력서 작성 교육 등) 뿐만 아니라 자신감 회복(취미·여가활동, 대인관계기술 교육, 현장탐방 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기간에 따른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청년도전 프로그램 개요]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원 내용 / 참여 청년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150만원(50만원×3회)	250만원(50만원×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 시 20만원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없음	없음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그램’은 청년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를 조성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초기 상담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성장프로그램’은 보다 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취업지원서비스이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단절된 청년을 집중적으로 돕는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 신규 유형 사업에 관한 사업모델 구축 필요 등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은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223억 700만원, ‘청년도전지원’ 사업 41억 6,200만원 등 총 264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제1회 추경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 사업	유 형		예산	추경안	증감
청년 일경험 지원	프로젝트형(10,000명 × 2.7백만원)		27,000	27,000	-
	국제인턴형(500명 × 10.33백만원)		5,165	5,165	-
	국내인턴형 (본예산) 23,000명 ⇒ (추경) 25,000명		131,100	142,100	11,000
	ESG지원형 (본예산) 35개 × 10억원, 9,500명 ⇒ (추경) 39개 × 10억원, 10,500명		35,000	39,000	4,000
	사회적가치 (본예산) 없음 ⇒ (추경) 1,000명 × 700만원		-	7,000	7,000
	용역비, 플랫폼 운영비 등		9,345	9,652	307
	청년 도전지원	도전 프로그램	단기프로그램 (본예산) 3,000명 ⇒ (추경) 3,400명	3,900	4,420
중기프로그램 (본예산) 6,500명 ⇒ (추경) 7,100명			28,015	30,601	2,586
장기프로그램 (본예산) 3,500명			26,075	26,075	-
운영비			643	643	-
성장 프로그램		사업비 (본예산) 40개 지자체 ⇒ (추경) 43개 지자체	16,000	17,056	1,056
		운영비	1,150	1,150	-
		계		172,223	197,973

* 자료: 고용노동부

우선,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최근 채용시장에서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채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무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며, 2026년 3월 현재 집행액은 642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p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2026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5년		'26.3월 현재
	'25.3월 말	'25년 최종	
예산액	214,090	214,090	207,610
집행액 (실집행액)	63,697 (6,428)	210,833 (193,625)	64,247 (8,804)
집행률 (실집행률)	29.8% (3.0%)	98.5% (90.4%)	30.9% (4.2%)

* 주: 보조금의 신속 교부, 프로그램 조기 개설 및 운영 독려 등을 통해 4월부터 사업 본격 추진 예정임. 다만, 후집행되는 보조사업의 특성상 운영 실적이 실집행에 반영되는 데는 1~2달의 시차가 있음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중 이번 추경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사업은 사회적기업 등에서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인턴형·ESG형과 달리 공익적 가치 창출을 전제로 한 일경험 모델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며, 이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결합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확장성을 갖는 시도로 보여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청년 인력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던바, 이러한 점에서 청년에게 사회적경제 분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단기적인 취업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규모가 작고 재정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일경험 제공 이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년 입장에서는 경험은 축적되더라도 실제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노동시장의 진입 연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 수행 경험이나 교육·훈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경험 프로그램의 질이 기관별로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참여 청년이 체감하는 효과가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사업은 신규 도입 단계이므로 표준화된 운영 모델이나 품질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사업 초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의 편차와 성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평가체계를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구직단념 또는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있음.

동 사업의 추경안은 41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전 프로그램과 성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단기·중기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추경을 통한 대응의 실익이 인정되고, 2026년 집행현황을 살펴볼 때 집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026년 도전 프로그램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5년		‘26.3월 현재
	‘25.3월말	‘25년 최종	
예산액	52,753	52,753	58,633
집행액 (실집행액)	26,387 (3,207)	52,729 (47,823)	26,342 (4,571)
집행률 (실집행률)	50.0% (6.1%)	100.0% (90.7%)	44.9% (7.8%)

* 주: 지방정부 공모 및 선정(2월), 인력 채용 및 참여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설되는 4월부터 사업 본격 추진 예정

*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성장 프로그램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5년		‘26.3월 현재
	‘25.3월 말	‘25년 최종	
예산액	18,900	18,900	17,150
집행액 (실집행액)	9,525 (1,453)	18,396 (16,994)	6,988 (2,144)
집행률 (실집행률)	50.4% (7.7%)	97.3% (90.0%)	40.7% (12.5%)

* 주: 지방정부 공모 및 선정(2월), 인력 채용 및 참여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설되는 4월부터 사업 본격 추진 예정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의 심리 회복과 구직의욕 제고를 통해 점진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즉, 단순히 참여 인원을 확대한다고 하여 단기간 내 취업 증가와 같은 가시적 성과로 직결되기보다는 이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후속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됨.

또한 정책 연계성 측면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고용 창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 경험사업 등과 연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정책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직업능력정책국]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1998년~, 직접)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돌봄서비스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6,273억 2,500만원 대비 2,530억 2,400만원(40.3%) 증액된 8,803억 4,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내일배움카드(일반)	580,161	596,161	627,325	880,349	253,024	40.3
· K-하이테크플러스사업	498,116	498,116	541,313	646,093	104,780	19.4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478,116	478,116	521,313	626,093	104,780	20.1
-첨단산업·디지털 기초 역량훈련	20,000	20,000	20,000	20,000	-	-
· K-뉴딜 아카데미	-	-	-	148,244	148,244	순증
· 돌봄서비스 훈련	33,100	33,100	29,440	29,440	-	-
· 일반고 특화훈련	45,557	61,557	55,383	55,383	-	-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지원	900	900	-	-	-	-
· 운영비 등	2,488	2,488	1,189	1,189	-	-

* 자료: 고용노동부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사업은 내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사업(이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과 신규 내역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사업임.

①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47억 8,000만원(20.1%) 증액된 6,260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등 훈련유형으로 구분되며, 훈련생들에게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¹⁹⁾ 2026년도 본예산의 동 사업 목표 인원은 49,500명임. 고용노동부는 추경안을 통해 목표 인원 1만명을 추가하여 2026년 총 59,500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함.

19) 2025년까지 훈련비 자부담 없이 전액 무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 훈련비를 일부(10% 자부담(상한액 60만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AI 중고급 훈련과정 참여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액을 면제함. 또한 2026년부터 훈련장려금을 11만 6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AI 및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과정의 경우 특별훈련수당을 지역기준(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차등적 지급 계획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훈련유형]

아카데미	내용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협약 체결, 프로젝트 기반(30% 이상) 훈련과정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민간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 체결, 채용연계형(50%, 협·단체 회원사) 훈련과정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삼성, KT 등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훈련과정
지역·산업 주도형 아카데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지역 및 산업 내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과정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	대학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산학협력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훈련과정

자료: 고용노동부

② 내역사업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직접 자율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쉬었음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1,48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주도로 첨단 분야 등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전통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뿐만 아니라 성장과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대기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의 운영방식은 기업의 자율성에 맞출 예정으로,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 취업취약청년을 우대하도록 하여 직무 분야 프로그램(50% 이상)과 직무 외 분야 프로그램

램²⁰⁾을 설계하도록 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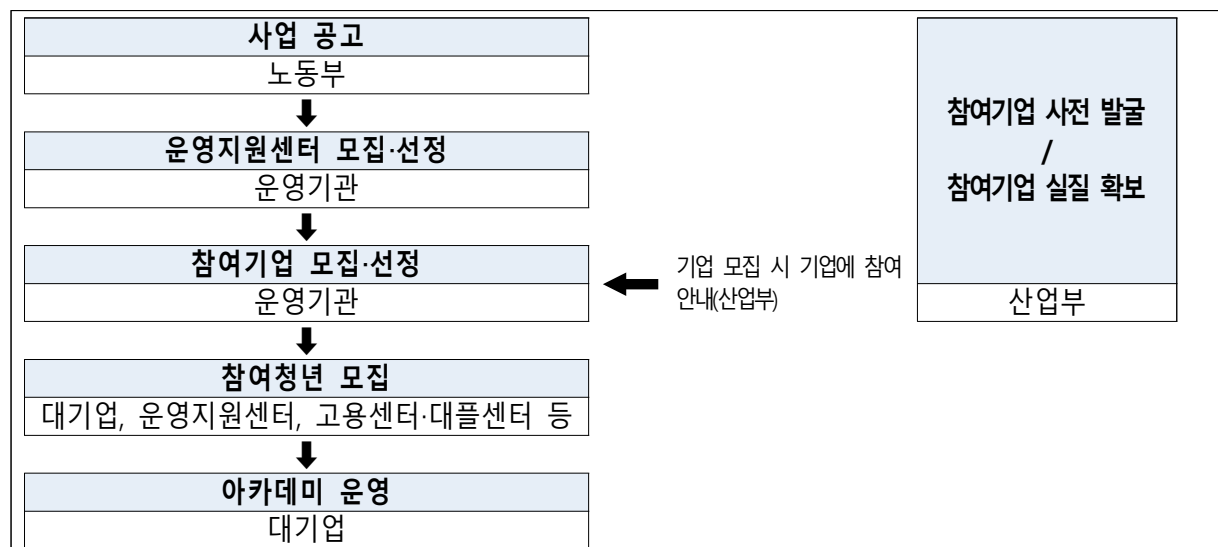
[K-뉴딜 아카데미 사업 개요]

- (사업 규모) 총 1.5만명
- (기업 참여) 대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 (운영 방식) 기업의 자율성·유연성 적극 지원
 - (운영 기간) 30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과 직무 외 프로그램으로 기업 자율 구성
- (운영비)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지원상한 有), 지역 우대
- (참여청년 지원) 수당 지급, 이력 관리 등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운영지원센터 모집·선정 이후 참여 대기업 모집·선정을 실시하고, 대기업, 운영지원센터, 고용센터 등을 통하여 참여 청년을 모집하여 대기업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추진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20) 고용노동부는 직무 외 분야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Peer grouping, 기업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추경 증액분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조정 필요 〉

고용노동부는 물가·경기 변동에 취약한 실업 청년에게 신기술분야 훈련을 통한 직무 역량 향상과 생활 지원을 위한 훈련 수당을 함께 지원하여 청년 생계 안정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지원 규모를 1만명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련수당 1,04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이때 청년계층의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을 고려하면 추경안을 통해 확대한 지원 규모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매년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26.2. 실적
24,015	11,727	28,521	22,394	36,580	29,295	44,000	37,400	45,125	42,191	59,500	3,866

주1) 실적인원은 결산상 훈련 비용 집행인원으로,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실시인원과 차이가 있음

주2) 2026년 목표는 본예산 49,500명과 추경안 10,000명분을 합한 수치임

주3) 2026년 실적은 2026년 2월까지의 KDT 누적 실시인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2025년까지는 훈련생은 훈련비 자부담이 없이 전액 무료로 훈

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 훈련생의 훈련비 10% 자부담²¹⁾이 발생하여 과거 전액 무료로 사업이 추진되었던 경우에 비해 참여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31.9% 증가한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사업 최초 시행 이후 현재 사업 안정화 단계인바 목표인원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훈련장려금이 2025년 월 11만 6,000원에서 2026년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훈련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또한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특별훈련수당과 훈련생 자부담이 면제되는 AI 특화과정 등을 통하여 훈련 유형 및 장소에 따라 일부 경우 훈련생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6년 1월과 2월의 실시인원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93명(△48.9%), △1,350명(△36.9%) 감소한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인원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인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²⁾

21) 상한 60만원

22)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신규과정 선정을 통해 AI 특화 과정의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계획 중으로 추경 증액분의 차질없는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2025~2026년 2월까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월별 실시인원]

(단위 : 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5년	3,055	3,654	4,521	3,482	2,689	3,848	4,549	2,943	4,924	2,747	2,892	8,395
2026년	1,562	2,304	※ 2026년 3월 실시인원은 집계 중(4월 중순 이후 집계 가능)									
증감	△1,493	△1,350										
증감률	△48.9	△36.9										

주1) 실시인원은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훈련 참여인원임

주2) 해당 수치는 고용정보시스템(EIS)를 통해 산출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 K-뉴딜 아카데미 사업과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필요 등 〉

고용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번 추경안에서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

이때 쉬었음 청년 인구가 40만명 후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고용대책이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라는 측면에서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동 사업의 내용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와 유사한데, 고용노동부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직업훈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삼성·KT·포스코·SK 하이닉

스 등 국내외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업 실무 자원과 프로젝트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훈련유형 중 하나임.

이때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사업내용·참여주체·참여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있어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와 K-뉴딜 아카데미 비교]

구분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K-뉴딜 아카데미 (추경안 신규 내역사업)
사업내용	삼성·KT·포스코·SK 하이닉스 등 국내외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업 실무 자원과 프로젝트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훈련 제공	대기업이 주도하여 첨단분야 등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미정
참여주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이상의 법인	대기업
참여대상	미취업 청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보유자 및 발급 가능자 중 기업별 공고대상이 상이하나 주로 청년이 참여 대상임)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취업취약청년 우대
훈련기간	3~6개월 (기업별 상이, 최대 1년 이하)	30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지원내용	· 기업별 커리큘럼 상이하나 직무분야 프로그램 추진 · 취업 니즈를 반영한 코딩테스트, 인공지능 활용능력 평가, 취업지원 플랫폼 등 지원	직무분야(전체 시간의 50% 이상) 및 직무 외 분야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및 대한상공회의소 설명자료 제작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면 기존 추진 중인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와 차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³⁾

둘째, 동 사업의 추진체계상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국내외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다수 대기업²⁴⁾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기업의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의 추가적 참여의사 및 수요 파악을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통해 참여기업 사전 발굴 및 참여기업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나, 동 사업이 추정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연내 집행이 완료되기 위하여는 사업의 주된 참여주체인 대기업의 참여의사 및 수요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보면, 고용노동부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대기업 참여의사 및 수요 파악을 통해 추정 신규 사업의 연내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3) 예컨대 기존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과 중복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대하여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4) 삼성, KT, 포스코,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마이크로소프트, SAP, 하나은행, 키움증권, 현대건설, INTEL, 두산 로보틱스 등 다수 대기업 참여 중

[노동정책실]

(1)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2012년~, 융자)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액 706억 3,500만원 대비 899억 4,400만원(127.3%) 증액된 1,605억 7,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B-A)	(B-A)/A
	당초	수정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70,352	86,356	70,635	160,579	89,944	127.3

* 자료: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체불사업주 융자’(이하 ‘사업주융자’)와 ‘체불근로자 융자’(이하 ‘근로자융자’)로 구분됨. 먼저 사업주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²⁵⁾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상

태 해소를 도모하는 것임.

근로자용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채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채불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채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채불금액²⁶⁾을 지원하고 있음.

[채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개요]

구분	채불사업주 용자('12.8월~)	채불근로자 용자('21.6.9. 시행)
지원형태	용자	용자
지원대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채불하였으나 채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용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채불사업자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가동	①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채불 ② 채불확인서 필요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1.5%
용자금액	원칙적으로 근로자 채불액만큼 용자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총 채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채불금액 (1천만원 한도)
용자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기별 분할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동 사업은 2021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채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하면서 소득요건 제한을

25) 사업장 1개소당 1억 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26) 1천만원 한도

삭제함으로써 용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용자금액 상향 및 용자요건 완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용자 인원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종전에는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용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했으나, 2024년 2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개정으로 동요건을 삭제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체불사업주가 용자를 쉽게 신청하고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연혁]

시행시기	세부내용
2021.2.10.	• 사업주 용자금액 상향 - 사업주당 7천만원 → 1억원, 근로자당 6백만원 → 1천만원
2021.6.9.	•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제도 이관 및 대상 확대 -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 - 소득요건 제한(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을 삭제함으로써 용자대상 확대
2023.7.1.	•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 용자금액 상향 : 사업주당 1억원 → 1.5억원, 근로자당 1천만원 → 1.5천만원 - 용자요건 완화 : 1년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무관 - 용자기간 확대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2024.1.1.	• 근로자 용자기간 확대 - 1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2024.8.7.	• 용자사유 완화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용자사유 폐지

* 자료: 고용노동부

〈 대규모 체불사업장 용자 대책 마련 검토 필요 〉

최근 5년간 체불청산지원 용자 현황을 보면, 2021년 총 409억 7,900만원의 용자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2025년 859억 1,100만원의 용자가 집행되어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2026년 초 대규모 체불사업장 발생으로 인하여 2026. 3. 30. 기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5,924명에게 369억원의 용자가 집행되었고, 2026. 2.까지의 용자 집행현황상 이미 2025년 859억 1,100만원의 46.9% 상당인 402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음.

[최근 5년간 체불청산지원 용자 집행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		사업주 용자			근로자 용자	
	근로자	용자금액	사업장 수	근로자	용자금액	근로자	용자금액
2021	7,020	40,979	555	4,178	21,255	2,842	19,724
2022	5,758	33,177	342	2,678	14,259	3,080	18,918
2023	10,120	72,786	482	4,210	25,579	5,910	47,207
2024	10,910	76,918	668	5,965	39,806	4,945	37,112
2025	11,853	85,911	870	7,556	53,224	4,297	32,687
2026.2.	7,566	40,269	208	1,601	12,360	5,965	27,909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대규모 체불사업장에 대한 집행 현황 등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추가 용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례없는 대규모 체불사업장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 체불사업장이 재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규모 체불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중 근로자용자는 1.5%의 저리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체불금액을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용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안정을 지원하는 의의가 있으나 이 경우 용자금의 채무자가 근로자가 되어 여전히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체불 상태에 있는 것이고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는데, 사업주용자는 2.2% 내지 3.7%의 저리로 근로자 체불액만큼 용자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가 용자받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물권 매각 등을 통한 채권추심 절차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체불임금이 청산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사업주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 용자를 하나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근로자당 1,500만원의 용자금액 한도의 적용을 받는바, 2026년초 발생한 것과 같은 대규모 체불사업장 발생시 각 근로자가 사업주용자를 통한 체불임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근로자용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1개소당 1억 5천만원 한도인 사업주용자 제도의 한도를 상향하는 등²⁷⁾ 대규모 체불사업장 발생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7) 한국노동연구원(2023)의 「채불 해결을 위한 책임 강화 방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근로자당 1,500만원 한도)인 사업주용자 제도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하였음. 다만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회복하지 못할 위험이 특정 사업주에게 집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용자실시 후 감시체계를 만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